

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 일
신청인	대표자	한 글 한 자
	상 호	생년월일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
	영업소	
	소재지	(전화번호:)
자 본 금		
장 비 보 유 현 황		
기 술 자 보 유 현 황		
사무실 보유(면적)	m ²	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,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.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.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.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(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)	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 음

유의사항

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